

운행정지표지(제107조제1항 관련)

(앞면)

운 행정 지	
자동차등록번호 :	점검당시 누적주행거리: km
운행정지기간 :	년 월 일 ~ 년 월 일
운행정지기간 중 주차장소 :	
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함.	
(인)	

134mm×190mm[보존용지(1급)120g/m²]

(뒷면)

이 표지는 "운행정지기간" 내에는 제거하지 못합니다

비고 : 1. 바탕색은 노란색으로, 문자는 검정색으로 한다.

2. 이 표는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붙인다.

유의사항 : 1. 이 표는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2. 이 표는 운행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담당공무원이 제거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하여야 합니다.

3. 이 자동차를 운행정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92조제1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